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재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발 의 자: 최재란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덕, 김영철, 박강산,
박철성, 서준오, 송도호,
이영실, 이용균, 임종국,
전병주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거주지 구분 없이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타 시 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급식비, 입학준비금”을 “급식비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입학준비금 지원)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2.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기관”을 “교육기관 또는 학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인건비, 교육활동 운영비, 학생 급식비,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재정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 <u>급식비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입학준비금 지원)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</u></p> <p><u>2.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</u></p>

제7조(지도·감독) ①·② (생략)

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
제7조(지도·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교육기관 또는 학생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	
1	제6조의2 (입학준비금 지원)	제1호	×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은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
		제2호	△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은 기추진¹⁾중으로 조례안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을 확대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, 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- (기존)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- (확대)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·도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6조의2(입학준비금 지원)은 기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대상(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→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타 시·도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)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, 현재 확대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추계세제팀장 추계분석관	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김중헌 이홍래 ☎ 02-2180-7952 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1)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입학지원금 지원사업
 - 대상 : 초·중·고 신입생
 - 지원사항 : 초등 8만원/중·고등 15만원
 - 지원형태 : 제로페이 입금 (사전)
 - 사용처 : 의류, 테블릿 기기, 교재, 교육비 등 * 음식료 구입 안됨